# 대법원 2022두54047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 2부(주심 대법관 이동원)는,

피고(금융감독원장)가 OO은행의 대표이사 또는 WM그룹장인 원고들에 대하여 2019년 위 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(독일국채금리연계 DLF)와 관련하여 감독자로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문책경고처분(원고1), 감봉요구처분(원고2)을 하자, 원고들이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,

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, "주식회사 OO은행이 '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 침'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거기에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시켰고, 위 내 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, 피고가 지적하는 여러 사정 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"고 보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[대법원 2022. 12. 15. 선고 2022두54047 판결]

# 1. 사안의 개요

#### 가. 사실관계

- 주식회사 OO은행은 은행업과 함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을 겸 영하면서, 2017년경부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(= DLF)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음
- 피고는 OO은행이 2019년 판매한 사모펀드인 '독일국채금리연계 DLF'(= 이 사건 DLF)의 손실률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,

2020. 3. 5. 원고 손△△(OO은행 대표이사)에게 위 원고가 임직원(행위자)들의 위반사실 ① ~ ⑤에 대한 감독자로서 "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다"라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하고, OO은행에 대하여 원고 정□□(OO은행 WM그룹장)이 위반사실 ① ~ ④의 행위자임을 이유로 원고 정□□에 대한 감봉요구(3월) 처분을 하였음(= 이사건 처분)

#### ■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음

- 위반사실 ① : 상품 출시 과정에서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음
- 위반사실 ② : 상품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음(위험관리, 소비자보호 업무 등을 수행할 조직·전산시스템 미비, 사모펀드에 대하여 판매 후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)
- 위반사실 ③ : 상품선정위원회 개별위원들에 대한 회의결과 통지 및 보고, 위원 선정 및 교체 등에 대한 기준·절차·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음
- 위반사실 ④ : 적합성보고서와 관련하여, 상품의 위험 정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유 사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·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음
- 위반사실 ⑤ : WM그룹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 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지 않음(준법감시인의 업무 중요도 및 위험도 판단 기준, 점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음, 자점감사 항목 선정을 실무부서에 위임하면서 불합리한 항목 선정에 대한 시정기준·절차를 마련하지 않음)
-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

## 나. 소송의 경과

■ 제1심: 원고들 승소(처분사유 중 위반사실 ③만 인정한 후 이 사건 처분에

재량권 일탈·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음)

- 원심: 피고의 항소 기각(처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)
  - 주식회사 OO은행이 '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'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거기에 구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」(2021. 3. 25.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-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'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'이나 구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시행령(2021. 3. 23.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'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·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' 등의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시켰고, 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, 피고가 지적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음
  - 피고가 상고함

## 2. 대법원의 판단

## 가. 쟁점

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

## 나. 판결 결과

■ 상고 기각 (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함)

## 3. 판결의 의의

■ 이 판결은,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'준수' 의무 위반에 대하

여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,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'마련'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'준수' 의무 위반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하고,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 당하였음